

수도법시행규칙 [제정 1969. 8. 4 건설부령제 95호 개정 1981. 2.25 건설부령제291호 전문개정 1992.12.15 건설부령제519호]

제 1 조(목적) 이 영은 수도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중수도 시설기준)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사용된 수도물을 생활용수·공업용수 등의 용도에 적합한 수질로 재처리할 수 있는 침전지·여과지·소독설비 등의 재처리시설
2. 필요한 양의 물을 송수할 수 있는 펌프·송수관 등의 송수시설
3. 필요한 양의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관 등의 배수시설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의 시설은 위생 및 안전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,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·하수도 및 가스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3 조(중수도의 수질기준) 중수도를 설치·관리하는 자는 중수도의 수질을 별표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 4 조(중수도설치자에 대한 지원)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중수도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

제 5 조(일반수도사업 인가신청) ①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인가(변경인가)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.

②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관계서류 및 도면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수도시설의 평면도 및 각 구조물도

2. 수리계통도·관로의 종단도 및 동구수배도
3. 취수량 및 취수에 대한 인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
4.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나타내는 서류

제 6 조(시설기준) 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취수시설은 계획된 취수량을 항상 확보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하고, 취수원의 유심변화나 하상상승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
2. 저수시설은 취수에 지장이 없는 규모로 설치하고 독을 쌓는 곳과 저수지 밑의 지반이 견고할 것
3. 하천·호소 또는 지하수를 수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수시설에 여과지를 설치할 것
4. 송수시설은 원칙적으로 관수로로 하여야 하되, 지형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질이 견고하고 오염의 우려가 없는 용수로로 대체하여 설치할 것
5. 급수구역 지반의 높낮이가 심한 경우에는 높은 곳과 낮은 곳을 구분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하되, 배수시설에는 배수지·감압밸브 또는 가압펌프를 설치하여 적절한 수압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

제 7 조(수도공사감독자의 자격) 영 제19조제4호에서 “건설부령이 정하는 자”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목·전기·전자·기계·건축·화공 또는 환경분야의 기사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.

제 8 조(준공검사 신청)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

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수도관리자의 자격) 영 제22조제1항 제5호에서 “건설부령이 정하는 자”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목·전기·전자·기계·건축·화공 또는 환경분야의 기사 1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이상 당해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.

제10조(공급규정의 승인신청)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수도요금의 수준·체계 및 산정기준
2. 원가계산
3. 수요예측

4. 급수절차

5. 급수장치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

제11조(전용상수도인가신청서) ①영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인가(변경인가)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.

②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급수인구조서로 한다.

제12조(과태료의 징수절차)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1992년12월15일부터 시행한다.

[별 표]

중수도의 수질기준(제3조 관련)

중수도의 용도 항 목	수세식변소용수	살 균 용 수	조 경 용 수
대장균군	1ml당 10을 넘지 아니할 것	검출되지 아니할 것	검출되지 아니할 것
잔류염소(결합)	검출될 것	0.2mg/ℓ 이상일 것	
외 관	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 것	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 것	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 것
탁 도	5도를 넘지 아니할 것	5도를 넘지 아니할 것	10도를 넘지 아니할 것
생 물 화 학 적 산 소 요 구 량 (mg/ℓ)	10을 넘지 아니할 것	10을 넘지 아니할 것	10을 넘지 아니할 것
냄 새	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	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	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
수 도 이 온 농 도	pH5.8이상 8.5이하일 것	pH5.8이상 8.5이하일 것	pH5.8이상 8.5이하일 것

- 비고 : 1. “살수용수”라 함은 도로청소작업·건설공사등을 하는 경우에 뿌리는 물로 이용되는 중수도를 말한다.
2. “조경용수”라 함은 주택단지 등의 인공연못·인공폭포·인공하천 및 분수등에 이용하는 중수도를 말한다.
3. 공업용으로 쓰는 중수도에 대하여는 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[별지 제2호서식]

수도공사준공검사신청서

1. 공사명
2. 사업인가 연월일
3. 착공 및 준공예정 연월일
4. 착공 및 준공 연월일
5. 공사비 정산액

위와 같이 수도공사를 준공하였기에 수도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의 주소

성명 (인)

서울특별시장
직 할 시 장 귀하
도 지 사

30303-04911민

210mm×297mm

'92.11.27.승인

(신문용지 54 g/m²)

[별지 제3호서식]

전 용 수 도 설 치				<input type="checkbox"/> 인 가 신 청 서 <input type="checkbox"/> 변경인가		처리기간	
						30일	
신 청 인 (시 행 자)	성명			주 민 등 록 번 호			
	주소						
사 업 내 용							
사업명칭							
사업목적							
급수구역							
목표년도				사 업 비		백만원	
수 원				수 질			
시 설 용 량 (m³/일)	구분	계		생 활 용 수		공 업 용 수	
	당초						
	변경						
총인구(인)		계획급수인구(인)		보 급 륜 (%)			
급 수 량	일최대급수량 (m³/일)		일평균급수량 (m³/일)		1인1일당급수량 (ℓ/일)		
사 업 기 간		급수개시에정일					
<p>수도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 (인)</p> <p>건설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귀하 직할시장 도지사</p>							

30303-05011민
'92.11.27.승인

210mm × 297mm
(신문용지 54 g/m²)